

부산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532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주식회사

7. G 주식회사

8. 주식회사 H

9. 주식회사 I

10. 주식회사 J

11. 주식회사 K

12. 주식회사 L

13. 주식회사 M

14. N 주식회사

15. 주식회사 O

16. P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Z 주식회사)

17. 주식회사 Q

18. 주식회사 R

19. 주식회사 S

20. 주식회사 T

21. U 주식회사

22. V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유상호, 임경윤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W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변 론 종 결 2021. 12. 16.

판 결 선 고 2022. 1. 20.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합10150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1) 피고와 X 사이에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X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지소 2017. 4. 18. 접수 제20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으로, 피고와 X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587,980,50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2 목록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9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한편 피고는, 대법원 2009다105734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형, 판사 이재욱, 판사 박선영

별지 1

부 동 산 목 록

1. 부산 사상구 AA 대 672㎡
2.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 요양병원 주건축물 AC동
[도로명 주소] 부산 사상구 AD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4층 요양병원
지하2층 461.65㎡
지하1층 239.98㎡
1층 336.08㎡
2층 320.43㎡
3층 320.43㎡
4층 320.43㎡
옥탑2층 28.41㎡
옥탑1층 28.26㎡. 끝.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원)
1		2,748,588
2		9,814,586
3		294,707
4		1,876,735
5		3,096,586
6		4,964,368
7		6,782,998
8		1,787,351
9		38,552,321
10		19,376,796
11		11,044,938
12		2,005,604
13		6,149,918
14		7,104,884
15		178,230,214
16		36,571,685
17		6,952,796
18		7,958,986
19		51,846,102
20		946,070
21		79,388,619
22		110,474,403
	합계금	587,969,255

